

공장의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“√” 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7일
------	-----	------	----

신청인	①성명(법인명)	②주민(법인)등록번호
	③주소(영업소)	
	④전자우편주소	⑤전화번호(휴대전화번호)

취득 부동산	⑥소재지			
	⑦구조		⑧개별공시지가	⑨지목
	⑩취득연월일		⑪연면적	⑫취득자
	⑬그 밖의 참고사항			

이전하기 전의 공장규모	⑭소재지				
	건물	⑮구조		⑯용도	
	토지	⑰지목		⑱개별공시지가	
	기타	⑲부대시설		⑳그 밖의 과세대상 부동산	
	가액	㉑계	㉒건물	㉓토지	㉔부대시설
					㉕기타
	㉖업종			㉗가동기간 . . . ~ . . .	

공 장 신 설 계 획	규모	건물	㉘구조	㉙용도
		기타	㉚부대설비	㉛구축물
	㉜업종			㉝사업시작예정일
	㉞착공예정일			㉟준공예정일
	㊱그 밖의 참고사항			

감면 근거 규정 및 사 유	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 조,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[]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[] 기획발전특구로 이전
----------------------	--

감면 안내 방법	[]직접교부 []등기우편 []전자우편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,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.
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80조 및 제80조의2,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위와 같
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.

신청인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이전하기 전의 공장 규모와 조업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공장시설 및 조업 확인서 등을 말합니다) 2. 이전 하기 전의 공장용 토지의 지목이 둘 이상이거나 그 토지가 두 필지 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 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 3. 이전한 공장용 토지의 지목이 둘 이상이거나 그 토지가 두 필지 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	---	-----------

작성방법

◇ 신청인

- ①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성명을, 법인은 법인명을 적습니다.
- ② 개인(내국인)은 주민등록번호, 법인은 법인등록번호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- ③ 주소(영업소)
 - 개인: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,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.
 -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: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,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. 다만,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.
- ④~⑤ 전자우편주소, 전화번호(휴대전화번호)를 적습니다.

◇ 취득 부동산

- ⑥~⑨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소재지, 구조, 개별공시지가, 지목을 적습니다.
- ⑩~⑪ 감면 신청 대상 부동산의 취득일과 부동산 면적을 적습니다.
- ⑫ 취득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과 상호명을,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.
- ⑬ 공장 이전에 관한 사항 중 지방세 과세와 관련되는 참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.

◇ 이전하기 전의 공장 규모

- ⑭ 이전하기 전에 조업한 공장 등의 소재지를 말합니다.
- ⑮~⑳ 이전하기 전의 공장 등에 대한 건물의 구조 및 용도와 토지의 지목 및 개별공시지가를 적고, 부대시설과 그 밖의 과세대상 부동산을 적습니다.
- ㉑~㉕ 이전하기 전의 부동산 가액이 각각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3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취득에 대하여 「지방세법」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적고,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적습니다.
- ㉖ 「지방세법 시행규칙」 별표 2에서 규정한 공장의 업종을 적습니다.
- ㉗ 이전하기 전에 조업한 공장 등의 가동기간을 적습니다.

◇ 공장신설계획

- ㉘~㉚ 공장신설계획에 따른 구조 및 용도, 부대설비, 구축물 등을 적습니다.
- ㉛ 「지방세법 시행규칙」 별표 2에서 규정한 공장의 업종을 적습니다.
- ㉜~㉞ 공장 등의 신설계획에 따라 일정별로 발생하는 예정일을 적습니다.
- ㉟ 공장 이전에 관한 사항 중 지방세 과세와 관련되는 참고 내용을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